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1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계약분쟁조정 시 이의신청의 임의적 전치절차 개편(안 제28조)	3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및 부당한 특약등 심사(안 제28조의2 신설 등)	6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등(안 제29조 등)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4. 14.

다. 회 부 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한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
- 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조정·재정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
- 다. 조정·재정의 절차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신청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재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제31조 및 제31조의2).
- 라. 조정·재정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6).
- 마.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7).

Ⅲ. 검토 의견

1. 국가계약분쟁조정 시 이의신청의 임의적 전치절차 개편(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다음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현행 제28조 제1항)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 <u>이의신청에 대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음</u> (현행 제28조 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다음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안 제28조 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u>4.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u>6.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u> <u>7.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u> <u>8. 증거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으로서 개산계약의 정산,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 기성대가와 관련된 사항</u> 9. (현행 제5호와 같음) <u><삭제></u>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③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④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⑤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그 밖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에서는 조정 청구인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는 자’로 규정하여³⁾, 이의신청이 실질적으로 조정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이의신청 대상 행위 중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가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조정의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직접 그 당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고, 이의신청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분쟁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 없이도 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조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및 부당한 특약등 심사 (안 제2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음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통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3.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0일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 제28조의2 제1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은 제2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안 제28조의2 제2항 신설) ○ 위원회는 재정신청된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8조의2 제3항 신설) ○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안 제28조의2 제4항 신설)
<신설>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재정하여야 함. 재정은 신청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문서의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봄 (안 제31조의2 신설) ○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재정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음 1. 재정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관계 전문기관의 출석 및 감정·진단·시험 요구 3. 분쟁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분쟁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안 제31조의3 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u>재정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재정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u> (안 제31조의3 제2항 및 제3항 신설) ○ <u>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 등을 할 수 있음</u> (안 제31조의3 제4항 신설)
<신 설>	○ <u>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당한 특약등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u> (안 제31조의5 제1항 및 제2항 신설) ○ <u>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u> (안 제31조의5 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은 위원회의 역할을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재정과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법”）」, 「건축법」 등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가 사실조사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뒤, 분쟁당사자가 그 재정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재정(裁定)’ 제도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 재정 제도 예시]

법률명	내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6조(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건축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조정의 경우 분쟁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의 효력이 성립하지 않는 반면, 재정의 경우 재정결정에 당사자가 소 제기를 통해서만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정에 비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⁴⁾.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부당한 특약등”)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다만 어떠한 특약이나 조건이 부당한 특약

4) 참고로, 2023~2025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건의 조정 불성립 비율은 56%에 달함

5) 제5조(계약의 원칙)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등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나 조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부당한 특약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전에 특약등의 부당성을 사전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부당한 특약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재정에 관한 타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준사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문서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서주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⁶⁾, 「건축법」⁷⁾

6) 제61조(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할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은 재정은 문서로써 하도록 하고, 재정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재정위원의 기명날인, 재정 문서의 송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正本(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등 (안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u>심사·조정</u>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둠 (현행 제29조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현행 제29조제2항) <u><신 설></u> <u><신 설></u> ○ 위원회는 <u>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조정</u>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u>계약 체결</u>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u><후단 신설></u> (현행 제30조 제2항) <u><신 설></u> <u><신 설></u>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u>조정·재정하고, 부당한 특약등에 대하여 심사</u>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둠 (안 제29조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29조제2항) ○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u> (안 제29조제8항) ○ 위원회는 <u>조정·재정 신청된 분쟁과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u> (안 제29조제8항) ○ 위원회는 <u>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u>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조정 또는 재정</u>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u>계약 체결 또는 이행</u>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u>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u> (안 제30조 제2항) ○ <u>위원장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정·재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재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조정·재정은 위원회의 조정·재정으로 봄</u> (안 제31조의4) ○ <u>조정·재정의 신청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중앙관서의</u>

현행	개정안
<신설>	<u>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함</u> <u>1.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u> <u>2. 신청자인 법인의 임직원</u> <u>3. 변호사</u> <u>4.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u> (안 제31조의6 제1항 및 제2항 신설) ○ <u>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u> (안 제31조의6 제3항 신설) ○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u> <u>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u> <u>2. 「소득세법」 제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지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u> (안 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 신설) ○ <u>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u> (안 제31조의7 신설)

개정안은 분쟁조정 청구건수 증가⁸⁾를 감안하여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8) 2014년 1건, 2020년 25건, 2023년 46건, 2024년 53건, 2025년 58건

풀(pool)제로 개편하고, 소액 분쟁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재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나 재정이 완료될 때까지 입찰 절차나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절차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침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조정·재정의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에서 신청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풀(pool)제 개편에 따른 조정·재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⁹⁾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5인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각 위원이 모든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6~9인의 위원만이 조정·재정에 참여하게 됨.

9)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따라 위원장의 지명만으로 안건별로 조정·재정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 수준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¹⁰⁾과 「건축법」¹¹⁾은 위원장이 사건마다 재정위원을 지명하되, 법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둘째,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리인을 자력으로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심판, 국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사법적·준사법적 절차에 도입되어 있음.

10)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국선대리인 제도 현황]

법률명	내용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4. (생략)
「특허법」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의 경우, 위원회의 재정 이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등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반면 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조정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타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자를 중소기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와 타 입법례를 감안할 때 자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 적용대상]

근거법령	내용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법 시행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1. 개인인 경우: 다음 두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나. 이하의 소유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i.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ii.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iii.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iv.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v.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법인인 경우: 다음 두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수입금액 3억원 이하 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법률 제214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이의신청)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 8. 증거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으로서 개산계약의 정산,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 기성대가와 관련된 사항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u> <u><신설></u>	<u>제28조의2(조정·재정의 신청)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u> <u>1.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u> <u>2.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통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u> <u>3.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0일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u> <u>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은 제2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u> <u>③ 위원회는 재정신청된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u>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u>조정</u> 2. (생략)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u>심사·조정</u>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u>심사·조정</u>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신설>	계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조정 또는 재정</u> 2. (현행과 같음)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 ----- -----<u>조정·재정</u>하고, 부당한 특약등에 대하여 <u>심사</u>----- ----- -----. ② ----- -----<u>30명</u>-----.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조정·재정 또는 심사</u>-----.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위원회는 조정·재정 신청된 분

현행	개정안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u>심사·조정을</u> 시작하는 경우 <u>청구인</u>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u>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조정이</u>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u>계약체결</u>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1조(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심사·조정청구</u>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u>심사·조정</u>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u>심사·조정의</u> 완료 전에 <u>청구인</u>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u>쟁과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⑩ -----제9항까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 제30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 -조정 또는 재정-----신청인----- -----. ②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또는 재정----- -----계약체결 또는 이행-----.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의 절차 및 효력) ① ----- -----조정신청을----- -----조정하 여야-----. ② -----조정----- --신청인----- ----- -----

현행	개정안
<u>청구인</u>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u>청구인</u>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u><신 설></u>	<u>신청인</u>----- ----- -----. ③ -----<u>신청인</u>----- ----- ----- -----. 제31조의2(재정의 절차 및 효력)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은 신청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④ 재정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3(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
<u><신 설></u>	

현행	개정안
<신설>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재정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정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관계 전문기관의 출석 및 감정·진단·시험 요구 3. 분쟁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분쟁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 재정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재정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등의 범위·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소액 조정·재정 등의 심사) ① 위원장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정·재정

현행	개정안
<신설>	신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재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은 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정·재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부당한 특약등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1조의6(조정·재정의 대리인) ① 조정·재정의 신청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u> <u>1.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u> <u>2. 신청자인 법인의 임직원</u> <u>3. 변호사</u> <u>4.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u> <u>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u> <u>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u>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2에 따라 조정·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u>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u> <u>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u>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담부서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을 위한 재심 청구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을 위한 재심 청구사건은 이 법에 따른 조정 신청사건으로 본다.	
제3조(조정·재정의 신청 및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재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의처

02)6788-5160